

보도시점 2023. 5. 3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3. 5. 30.(화)

먹는물관리법 정비로 안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자)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 · 수입판매업을 말함

** (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먼저 먹는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①기술적 심사 의견 외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끝.

담당 부서	물관리정책실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강명화 (044-201-718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먹는물 검사기관 등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 종전에는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사 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6. ~ 3.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제11조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을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본문 중 “검사기관”을 “검사기관(제35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사무소가”를 “사무실이”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사무소를”를 “사무실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사무소와”를 “사무실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본문의 “사무실”을 “독립된 사무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비고 제5호 중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를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검사기관별로 갖추어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 중 “허용여서는 아니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참고용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 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1)부터 3)까지의 시료채취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 1) 도서(島嶼)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
- 2)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 3)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3의2. 검사기관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참고용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별표 8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였을”을 “했을”로, “구분에 따른 서류에 해당 각 목의 내용을”을 “서식 또는 서류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지 제41호서식의 시료채취기록부

나. 검사기록부[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및 분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8)가) 및 나)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능력·시설”을 각각 “기술능력,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9)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마)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	------	--

별표 9 제2호라목2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적합한 하지 아니한”을 “적합하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시료 채취 기록부																
시료명			시료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시료용기 및 시료보존제	분석 항목	용기/시료량	보존제 종류	보존제 첨가량	보존제 첨가 시간	비고										
	예시) 페놀류	유리 100mL/ 80mL	염산(1+1) 티오황산나트륨 100g/L 용액	염산 1 mL 티오황산나트륨 1mL	14:30											
현장측정값																
기타																
특이사항																
시료 운영방법 및 운송시간																
위와 같이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 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검사 시 보존제 및 현장측정값 관련 항목은 필요시 작성 <table><tr><td>채취자</td><td>소속</td><td>직급</td><td>성명</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실험실 인수자</td><td>소속</td><td>직급</td><td>성명</td><td>(서명 또는 인)</td></tr></table> ※ 이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보존제 및 현장측정값 관련 항목은 줄, 칸 등 일부 양식 변경 가능							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실험실 인수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실험실 인수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u>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u>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u>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u> 을 <u>발급하여야</u> 한다. <u><신설></u>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 <u>발급해야</u> ----- --. <u>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u> <u>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u> <u>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u>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 ----- ----- ----- <u>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u> -----.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u>검사기관</u> 에서 검사업무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u>검사기관</u> (제35조제6항제

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
아야 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
다)-----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